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8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09일
발 의 자: 유정희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춘곤, 박철성, 심미경, 아이수루, 유정인, 이종환, 이효원, 임종국, 전병주, 한·신, 홍국표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최근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 작품 구입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격 상향 조정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논란의 여지를 사전방지하고, 소장 작품 구입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미술관 자료구입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 ⑤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자료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 ④ (생략) <u><신 설></u></p> <p>⑤ <u>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⑤ (생략) <u><신 설></u></p> <p>⑥ (생략) <u><신 설></u></p>	<p>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자료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u></p> <p>⑥ <u>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u></p> <p>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u></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u>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u></p>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제31조(위원회 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31조(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